

2022년 달라지는 주요국 농식품 수입 제도

1. 변경내용 총괄

국가	주요 내용	적용시점
글로벌	· RCEP(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) 발효	'22.02.01.~
중국	·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확대 시행	'22.01.01.~
미국	· BE(유전자 변형) 식품 관련 표시 의무화	
UAE	· 영양성분 컬러표기(Traffic Light Food Labeling System) 의무화	
러시아	· 냉동 우육 및 돈육(가공용 원료) 수입 쿼터제도 도입	

2. 국가별 변경내용

RCEP* 발효 *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)

- 한·중·일, 호주, 뉴질랜드, ASEAN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협정국간 추가 시장개방으로 한국 농식품 수출국 다변화 및 시장 확대 기대
 - 원산지 기준 통합, 통관절차 및 표준 간소화 등으로 역내 거래비용 절감 등

< 주요 내용 >

- (시장 개방 확대) 기존 FTA 대비 추가 양허품목 확대(국가별 상이)
 - (일본) 막걸리, 소주 관세 20년에 걸쳐 점진적 철폐 예정
 - (인도네시아) 사과, 배 / (태국) 딸기 관세 즉시 철폐 등
 - (위생검역 협력 강화) 협정국 간 투명하고 합리적인 SPS*(동식물위생검역조치)운용
 - 동등성·지역화 불인정 시 사유 제시, 수입 위험분석 진행 상황 통지, 통보 강화 등 구체적인 정보 공유 및 교환
 - 위생검역과 관련한 중대한 부적격 사유 발생 시, 수출국에 재발 방지 대책 요구
- * SPS(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) :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, 식품이나 사료의 특정 물질의 제한적 사용, 라벨링, 인증, 포장 요건에 대해 시행되는 조치
- (원산지 기준 통합) 협정국 간 원산지 기준 통합 및 원산지 증명 절차 개선
 - 원산지 자율증명 도입
 - 누적 기준 적용을 원산지 규정 충족조건의 확대
- * RCEP 참여국 원재료를 사용시, 최종 생산국을 원산지로 인정해 특혜관세 부여(원산지누적) 허용

☞ <농식품 수출을 위한 RCEP 협정 활용 매뉴얼(21.5월제작)> 활용
 농식품분야 제도 활용 업계 안내 * 농식품수출정보(KATI, www.kati.net)

□ 중 국

○ ‘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’ 전 품목으로 확대 시행

- 모든 對중국 수출식품군의 생산, 가공, 저장기업 사전등록 의무화 및 품목의 라벨링 규정 변경

○ 주요 변경사항

구 분	주 요 변 경 내 용
해외생산업체 등록범위 확대	○ (기존) 육류, 수산물, 유제품, 제비집 → (변경) 모든 식품 ⇒ 모든 對중국 생산, 가공, 저장, 수출식품군의 직접 관리 가능
해외생산업체 등록신청 서류	○ 등록대상 품목(업체)별 신규 신청서류 추가 및 일부 등록서류 폐지 - (신규) 소재국가 주관당국의 추천서 등 / (폐지) 동식물 전염병 발생상황 등 ⇒ 수출입식품 관리체계 시스템화에 따른 서류 추가 및 폐지
유효기간 연장 및 등록변경	○ 유효기간 연장 : (기존) 허가 후 4년 → (변경) 5년 ○ 연장등록 기한 : (기존) 만기도래 1년전까지 → (변경) 만기전 3~6월내 ○ 등록사항 변경신청 : 제조 장소 이전, 법정 대표 변경 또는 수출국에서 부여한 등록번호 변경시 재등록 신청(수시 가능) ⇒ 수출업체의 등록관련 편의제고(유효기간 연장, 등록기한) 및 주요사항 관리 강화(등록사항 변경신청)
평가, 심사	○ (기존) 서면, 현장 검사 → (변경) 영상 검사 추가 ⇒ 코로나19에 따른 현장검사 리스크 회피 및 다양한 검사 가능
포장표시 (라벨링)	○ (기존) 외포장에 중국등록번호 표기 → (변경) 내·외 포장 모두에 중국 또는 수출국 등록번호 표기 ○ (기존) 보건, 특수 식품에 스티커 부착 가능 → (변경) 인쇄로만 가능 ⇒ 수출입식품 관리체계 시스템화에 따른 선진관리체계 구축
등록 말소	○ (신규) 등록연장을 않거나,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록말소 가능 ○ (신규) 수출국 관리감독 실시, 미부합시 시정시까지 수출중단 요구 가능 ⇒ 대 중국 수출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중국측 영향력 확대

☞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(www.singlewindow.cn)를 통한 사전등록 필요

- 중국 수출을 위한 사전등록 절차가 전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對중국 수출기업은 수출식품군의 생산, 가공, 저장기업 사전등록 및 라벨링 규정 확인 필수

*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이용 매뉴얼('21.11, aT상하이지사) 제공(농식품수출정보 KATI)

□ 미 국

○ 유전자 변형 식품(GM 혹은 BE) 표시 의무화 * BE : Bioengineered Food

- '22년 1월 1부터 BE Disclosure(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식품임을 표기) 의무화가 시행됨 * USDA, the 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 공표('18.12.20.)
- 유전자 변형 식품에 관한 민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아래 옵션 중에 선택하여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야 함

☞ BE Disclosure(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식품임을 밝힘) 방법 예시

- 텍스트, 기호, 전자 혹은 디지털 링크 및 텍스트 메시지
- * 소규모 식품 제조업체의 경우나 매우 작은 포장상태의 경우 전화번호나 웹 주소 가능



- 이미지 출처 : Ins and outs of the US GMO disclosure law, Greg Jaffe, 2017. 9. 25

□ UAE

○ 영양성분 컬러표기(Traffic Light Food Labeling System) 의무화

- 유해 물질 검열 및 건강한 음식 섭취를 유도하기 위한 제품 영양 성분 표시 강화를 위한 라벨링 컬러표기 의무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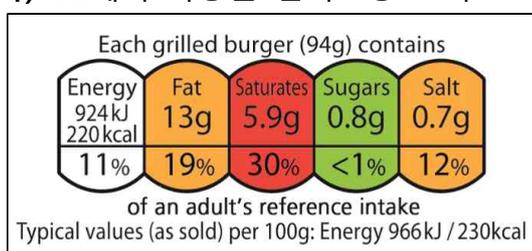
☞ **컬러코딩(color coding)** : 식품 성분(소금, 설탕, 지방, 포화지방)의 함량에 따라 영양 성분 라벨링 신호등 색(Red, Amber, Green)으로 구분

☞ 라벨링 분류 기준

제품 영양 및 성분, 지방 함유율, 포화 지방량, 설탕 및 소금 함유량, 에너지 함유량에 따라 A(초록) 상위 등급에서 E(빨강) 하위 등급으로 나뉨

* 해당품목 : 통조림, 고체 및 액체 식품(신선과일, 야채, 고기, 생선류 제외)

(예시) UK에서 사용된 컬러코딩 표기



이미지 출처 : Nutrition declarations,
www.foodstandards.gov.scot

- 이 제도는 유럽 국가(프랑스, 벨기에 등)의 제도를 참조하였으므로 기존 사용되고 있는 코드를 참고해 UAE 수출 식품의 라벨을 효율적으로 준비해야 함

□ 러시아

○ 육류 가공용 원료의 냉동 우육 및 돈육 수입 쿼터제도 도입

- 러시아 농무부는 가공용 원료가 되는 냉동 우육 및 돈육의 수입의 면세 쿼터량을 발표, 자국 식량안보를 위한 가격안정 종합대책으로 보여짐

품목	쿼터내 물량	유효기간
냉동 쇠고기	20만 톤	2022년 1월 1일 ~ 12월 31일
냉동 돼지고기	10만 톤	2022년 1월 1일 ~ 6월 31일

* 해당 품목이 가공용 원료로 수출될 때만 쿼터에 포함